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2일, 조경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9.)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9.3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허가를 받은 수면에서만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한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로 인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양식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양식시설물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거 명령에 따라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양식시설물에 그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신설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명예감시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양식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을 통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성완)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가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양식업 종류별 면허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된 양식 시설물 중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유사 제도인 어구실명제에 대한 벌칙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식시설물 실명제의 위반의 법익침해 정도가 어구실명제와 다른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대집행법」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특례 요건을 “양식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불법 양식시설물 정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법 양식시설물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양식시설물 실명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유사제도인 어구실명제와 동일하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및 체계를 고려하여 자구를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식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요건을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안 제56조의3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허가양식업자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양식시설물 실명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유사제도인 어구 실명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하고, 명예감시원의 활동 목적 및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계몽”으로 수정하며, 개정 규정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수정주요내용

1.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요건을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안 제56조의3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허가양식업자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보완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을 추가함(안 제56조의3).

2. 명예감시원의 활동 목적 및 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계몽”으로 함(안 제58조의2).

3. 양식시설물 실명제 위반에 대한 벌칙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안 제80조제2항).

4.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안 부칙).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를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안 제58조의2제1항 중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을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로 한다.

안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는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u>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식시설물을 철거

하는 경우

<신 설>

2. 제56조의2에 따
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
거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
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
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
에 설치한 양식
시설물을 철거하
는 경우

3. (개정안 제2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
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
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개정안 제2항과
같음)

<신 설>

지 아닌한 양식시
설물의 귀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명예감시
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
서를 확립하기 위
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
촉하여 양식업 질
서에 대한 감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
예감시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제58조의2(명예감시
원) ① -----

-----양식장의 안
전관리와 불법 양
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u>위축방법, 임무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0조(벌칙) ----- ----- ----- ----- ----- ----- -----.	제80조(벌칙) ① ---- ----- -----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u>제56조의2제1항</u> <u>을 위반하여 양</u> <u>식시설물에 표시</u> <u>를 하지 아니한</u> <u>자</u>	1. (개정안과 같음) <u><삭제></u>
2. <u>제71조제1항에</u> <u>따른 장부·서류,</u> <u>그 밖의 물건</u> 의 <u>검사에 따르지</u> <u>아니한 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② <u>제56조의2제1항</u> <u>을 위반하여 양식</u> <u>시설물에 표시를</u> <u>하지 아니한 자는</u> <u>1천만원 이하의 벌</u>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u> <u>개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금에 처한다.</u> 부칙 -----<u>1</u> <u>년</u>----- -----.
--	--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양식시설물”이라 한다”를 “이하 “양식시설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양식시설물 실명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권자 및 허가양식업자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양식시설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물마다 양식시설물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행정관청은 양식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알 수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식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획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일정한 수면 외의 수면에 설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신 설>

3. 제56조의2에 따른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위반한 양식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양식시설물의 철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양식장 안전관리 및 양식업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양식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양식시설물의 귀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명예감시원) ① 행정관청은 공정한 양식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양식장의 안전관리와 불법 양식행위 등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제80조(벌칙) (생략) 1. ~ 2. (생략) <u><신설></u>	<u>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제80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② <u>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